

심사보고서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38
----------	-----

2023. 7. 14.(금)
행 정 문 화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3년 7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7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7월 14일

-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신형근 행정국장)

☐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 대 상: 충청북도가 출연한 비영리 기관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비영리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기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재산위치: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은행상야로 425, 자치연수원
- 사용면적: 건물 527㎡(1층 437㎡, 2층 90㎡) ※도민교육관 총 면적 2,427㎡
- 사용목적: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공간(사무실, 회의실 등)

- 사용기간: 2023. 6. 26.~2028. 6. 25.(5년간)
- 감면내역: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 사용료: 월 1,651,55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유상)2023. 6. 26.~7. 25. / (무상)2023. 7. 26.~2028. 6. 25.
- 적용시기: 2023. 7. 26.~2028. 6. 25.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제1항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사용료감면)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현황

- 개 소 일: 2023. 1. 1. ※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평생교육진흥원 통합
- 설립목적
 - 지역 우수 인재발굴·양성과 평생교육진흥 관련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충청북도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
- 주요사업
 - 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
 - 우수인재 발굴사업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조사 등
- 기 구: 1처, 4팀(경영지원, 인재양성, 정책기획, 평생교육)
- 인 원: 20명(원장 1, 사무처장 1, 직원 18)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2023. 1. 1. 개소하였고, 2023. 6. 26.부터 당해 행정재산을 사용하였음.
- 이번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사용료 감면)에 따라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에 대해 그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이번 감면 동의안으로 해당 출연기관 임대사용료를 도비로 지원하고, 다시 납부받는 형식에서 벗어나 향후에도 불필요한 행정과정을 제거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338
----------	-----

제출연월일 : 2023년 7월 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지역 우수 인재 발굴·양성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도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 대 상: 충청북도가 출연한 비영리 기관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기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재산위치: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은행상야로 425, 자치연수원
- 사용면적: 건물 527㎡ ※ 도민교육관 총 면적 2,427㎡
- 감면내역: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 적용시기: 2023. 7. 26. ~ 2028. 6. 25.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사용료 감면)

3. 참고사항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현황

- 개 소 일: 2023. 1. 1.
- 설립목적
 - 지역 우수 인재발굴·양성과 평생교육진흥 관련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충청북도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
- 주요사업
 - 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
 - 우수인재 발굴사업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조사 등
- 인 원: 20명(원장 1, 사무처장 1, 직원 18)

4. 관계법령 발체 : 붙 임

《관련 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2022. 11. 15.>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5. 7. 20.>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0.>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7. 20., 2022. 4. 20.>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6. 7. 12., 2020. 12. 22., 2022. 4. 2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우수 인재 발굴·양성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등기)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진흥원의 등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충북인재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
3. 과학·문화 등 영재교육 지원사업
4. 충북인재양성 정보화 시스템 구축
5.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
6.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조사·컨설팅
7.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8. 문해교육센터 운영

9.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임원 등) 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조직 및 운영)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진흥원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진흥원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토록 할 수 있다.

⑤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 및 기금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군의 출연금

2. 개인·기관·단체의 기부금

3. 기금의 운영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출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진흥원의 재산 및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진흥원의 기금은 장학 및 인재양성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정관의 변경 등) 정관의 변경 등 진흥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를 경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2조(사업계획 승인 등)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결산서 제출 등)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공개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진흥원운영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진흥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진흥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여 재산 및 기금을 사용하였을 때
2.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3. 도지사의 승인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때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와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